



## 202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안내



성남시는 관내 중소수출 업체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분야 : 324개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FDA, CCC 등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제외
  - 수출 1,000만불 초과기업(2019년 직접수출실적)
  - 최근 2년 이내 성남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임의포기 업체
  - 성남시 지방세 체납업체
  - 타 기관 등에서 동일 품목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지원범위 : 최고 500만원(인증획득 비용의 70% 이내)
- 항목별 제한금액 : 시험비용 70%이내 300만원, 컨설팅 비용 70%이내 100만원, 인증비용 최고 70%이내
- 신청기간 : 2020. 2. 3. ~ 2. 14(2주간)
- 신청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수출실적확인서 등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2020. 2. 14. 소인분 까지)
- 신청문의
  - 담당자 : 성남시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xianghe823@korea.kr](mailto:xianghe823@korea.kr))
  - 접수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8층 산업지원과
  - 신청양식 :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

**【붙임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24개)**

1.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5)	3-A (미국낙농 및 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 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SA (미국연방조달청)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SCS	SRCC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북미휴대폰인증)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 (Warnock Hersey Mark)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28)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협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3)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8)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축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일본 (25)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 (Product Safety Consume-일본 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JAPAN MI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 (러시아)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말레이시아 (2)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TFDA (대만의료기기)	
브라질(3)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11)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RDSO (인도철도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네시아 (3)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6)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HG/T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 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위생허가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캐나다(7)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1)	Registrosanitario (보건등록증)		
폴란드 (1)	B mark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1)	ERC		
라오스 (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3)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2)	MOH (이란보건부등록)	ISIRI (이란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레 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제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식품인증)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KOSHER	LPCB	MPR2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유대교식품적법인증)	(보안및화재예방인증)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718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8개기관: BACL, CSA, CSL, FM, IAPMO, ITSNA, MET, NNA, NSF, QAI, QPS, SGS, SWRI, TUV North, TUV PTL, TUV SUD, TUV PSG, UL)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서식1』

## 202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소 재 지					
연락책임자	직책: 성명:	전 화 (휴 대 폰)		e-mail	
주요생산품목		상시종업원수	명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수출액	천불		수출주문 확보금액	천불	
신청인증	인 증 분 야		인 증 명 칭		신 청 품 목
	제품인증( )				
인증획득 관련사항	비 용	인증비용 : 시험비용 : 컨설팅비용 :	천원 천원 천원	계	
	사 업 기 간				
	제품특성				
	추진방법	단독추진( ) 컨설팅기관명	컨설팅기관대행( ) 직위	성명	연락처
증빙자료 첨부내역	①벤처기업( ) ②InnoBiz기업( ) ③품질시스템확보( ) ④NT( ) ⑤KT( ) ⑥EM( ) ⑦IT( ) ⑧GQ( ) ⑨특허.실용신안( ) ⑩수출유망중소기업( ) ⑪기업부설연구소( ) ⑫일류화상품기업( ) ⑬ 경영혁신중소기업( ) ⑭ 여성.장애인가기업( ) ⑮ 수출실적 (\$ ) ⑯기타( ) ※ 증빙자료 첨부시에만 평가점수 인정(괄호안에 증빙개수 표시)				

성남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 부 : 1. 소기업, 신규 창업기업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기업만 제출)  
 2. 기술.품질수준 증빙자료 1부(해당기업만 제출)  
 3.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기업만 제출)

2020. . .

신청업체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2』

##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협약서

성남시와 인증획득 지원 대상업체 대표(이하 "지원업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과제(이하"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 1조 (과제 개요)

본 협약의 과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담당자/전화번호	
과 제 범 위	인증명칭		인증품목	
과제수행기간	2020. . . ~ 2020. . .			( )개월
과제수행추진방법	단독추진( ), 컨설팅기관대행( )			
과 제 책임자	주관기업	부서	직위	성명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명	직위	성명

### 제 2조 (인증획득비용, 성남시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의 산정)

인증획득비용은 향후 예상소요비용을 시험비용, 인증비용, 컨설팅비용의 비용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산출하여 합산하고, 기업부담금은 인증획득비용에서 사업지침에서 정한 성남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부가세 지원 제외)

(단위 : 천원)

비 용 항 목	총 인증획득비용	지원금액산출	비 고
인 증 비 용			획득비용의 70% 지원
시험비용			획득비용의 70% 지원 최고한도 3,000
컨설팅비용			획득비용의 70% 지원 최고한도 1,000
합 계	㉑	㉒	※ 최고 500만원 이내

(단위 : 천원)

㉑인증획득비용	㉒성남시지원금	기업부담금 (㉓=㉑-㉒)

(단위 : 천원)

인증비용 세부내역	인증예정기관		소요금액 산출내역	
			간략히 서술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시험비용 세부내역	시험예정기관	시험분야	시험항목	시험항목별 산출내역
컨설팅비용 세부내역	컨설팅비용항목		소요금액 산출내역	

\*주 : "단독추진과제"인 경우 컨설팅비용항목 기재 생략  
시험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의료기, 기타분야 등으로 구분(구체적 기술)  
시험항목은 전자파시험, 안전시험, 생물학적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제 3조 (과제의 수행, 완료보고 및 지원금의 지급)

- ① '지원업체'는 과제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부속서류 포함)를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성남시'는 '지원업체'가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획득 비용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③ '성남시'는 '지원업체'가 협약체결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과제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 4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지원업체'는 '성남시'가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5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 '성남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협약금액 증가 불가하다.

### 제 6조 (협약의 해약 등)

- ① '성남시'는 '지원업체'가 본 협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② '성남시'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지원업체'에 대하여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본 협약서상 과제수행 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4.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성남시'가 인정하는 경우

### 제 7조 (기 타)

- ① 과제수행기간은 2020년 11월 20일까지로 하나, 명확한 사유에 따라 수행기간 연장요청 공문 시행 시 11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성남시'는 '지원업체'가 본 협약서상 과제수행 기간 내(연장기간 포함)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협약이 자동 해약된 것으로 본다.
- ②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2020.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운영요령 및 세부 시행지침 등을 참조하여 '성남시'와 '지원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성남시', '지원업체'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③ 과제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인증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등은 '지원업체'가 책임을 진다.
- ④ 성남시의 지원을 받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 품목 및 규격이 추후 타 기관의 지원 해외규격인증사업 품목 및 규격과 중복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한다. 즉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할 수 있다.

- 첨부
1.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2. 주관기업과 컨설팅기관간 인증획득대행 용역계약서 1부 (컨설팅업체 대행시 제출)
  3. 해외규격인증획득성과보고서 1부(해당기업만 제출)

2020. . .

(성 남 시) 성남시장 은수미 인

(지원업체) \_\_\_\_\_ 인

**【서식 3】**

**해외규격인증 획득 성과보고서**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주요생산품목		종 업 원 수	
인 증 명 칭		인 증 품 목	
인 증 획 득 일		컨 설 텅 기 관	
인증획득비용		성남시지원금	
구 분		수 출 (US\$)	내 수 (백만원)
인증획득 전년도 수출·국내 매출 증가액			
인증획득 후 수출·국내 매출 증가액			
<p>&lt;주요내용&gt;</p> <p>“ 구체적 실적 또는 예상 성과 ”</p>			

- ◇ 수출성과 증빙자료 별첨
- 해외인증 획득으로 인한 수출실적 증가 또는 신규시장 개척으로 인한 수출성과를 중점적으로 기술 (수출(증가)액 또는 수출계약액 명시)
  - 수입대체·내수확대 및 제품신뢰도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 기타 해외인증획득으로 인한 성과기술

【서식4】

202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간점검 조사서

일 시 : 2020. . .

업 체 명 :

제 출 자 :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평가 (여부)	조 사 자 의 견
인증숙지 여부	인증 절차에 대해 숙지하였는가?		"중점 숙지내용 서술"
	관련 규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규격선정 사유, 필요성 등"
	인증 시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준비가 이루어졌는가?		"인증 시 필요한 자료 등, 검토 및 준비사항 서술"
인증 진행상태	제품 개발(설계)중		"진행사항 구체적 서술"
	제품 시험 진행 중		
	제품 시험 완료		
인증획득 가능성	인증획득가능성 : 상		"인증 획득 예상기간, 시기 등 구체적 서술"
	인증획득가능성 : 중		
	인증획득가능성 : 하		
종합의견	"계획 대비 진행사항, 획득 후 예상 성과, 추진 상 문제점, 대책 등"		

**【서식 5】**

**2020.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

**1. 과제 추진 내용**

과제범위	인증명칭		인증품목	
인증승인기관			인증취득일	
과제수행기간	2020. . . ~ 2020. . .		( )개월	
과제수행추진방법	단독추진( ), 컨설팅기관		대행( )	

**2. 과제 수행비용 내역 (실제 집행한 인증획득비용)**

단위 : 천원

인증비용 세부내역	인증기관		집행금액 산출내역	
시험비용 세부내역	시험기관	시험분야	시험항목	집행금액 산출내역
컨설팅비용 세부내역	컨설팅비용항목		집행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비용항목	총 인증획득비용	지원금액산출	비고
인증비용			획득비용의 70% 지원 <b>한도 없음</b>
시험비용			획득비용의 70% 지원 <b>최고한도 3,000</b>
컨설팅비용			획득비용의 70% 지원 <b>최고한도 1,000</b>
합계	㉠	㉡	합산 500만원 까지



단위 : 천원

㉔완료보고서 실제 집행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지원금	
㉕협약 체결 시 예상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출한 지원금	

단위 : 천원

㉖인증획득비용	㉗성남시지원금	기업부담금 (㉘=㉖-㉗)

### 3. 지원 성과

- 첨부 : 1. 인증획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인증획득비용 사용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 비용청구서, 송금내역서, 컨설팅비용 산출내역서 등) 1부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급신청서 및 업체명의 통장사본 1부  
 4.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협약서 사본 1부

성남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제 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6】**

**2020.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금 지급 신청서**

=====

**1.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과제책임자		전화번호(팩스)	
인 증 명 칭		품 목 명	

**2. 인증업무 추진**

컨설팅 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과 제 책 임 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팩스)

**3. 지원금 지급신청 내용**

지급금액	금 오백만“한글기재” 원 (금 5,000,000“숫자 기재” 원 )		
금융기관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첨부 참여기업의 지원금을 입금 할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2020. 성남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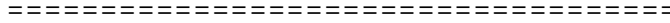
2020. . .

신 청 인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7】**

**컨설팅비용 산출내역서**



컨설팅기간	2020 . . . . ~2020 . . . .	인증명칭		인증품목	
주관기업명 (전화번호)		과제책임자	(서명)	서명일자	
컨설팅기관		과제책임자	(서명)	서명일자	

컨설팅일자	컨 설 텅 내 역	컨설턴트성명	비 고
합 계	( )MD × ( )단가	산출금액계	

※ 내용 부족 시 별지 사용